

변화맞이·새출발: 《증치세법실시조례》 발표, 증치세 정책 주요 변경사항 요약

2025.12
Issue 16

개요

2025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실시조례》(초안)가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2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실시조례》 공식 문건¹(이하 “《실시조례》”)이 발표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²(이하 “《증치세법》”)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8월 11일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실시조례(의견수렴본)》³(이하 “《의견수렴본》”)에 비해 《실시조례》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매입세액 전출(불공제)이 필요한 비과세대상 거래의 정의, 구분 불가 매입세액 전출액의 연도 종합정산, 수출환급(면세) 등 방면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져, 의견 수렴 단계에서 제기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인이 단위(기업)에게 제공하는 과세대상 거래(이하 “C2B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신설하고, 건별 납세의 신고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Newsflash에서는 《증치세법》 및 《실시조례》와 현행 증치세 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하고 향후 명확히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전망하였습니다. 추후 후속 문건이 조속히 이를 명확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세 내용

1. 경외 서비스/무형자산 판매자의 일부 “경외→경외 거래”가 중국 경내 과세대상 거래가 될 예정

서비스, 무형자산 판매와 관련하여, 현행 증치세 정책과 《증치세법》총칙은 일치합니다: 즉, 경내에서의 서비스, 무형자산 판매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치세법》과 《실시조례》는 “경내에서의 서비스, 무형자산 판매”의 판단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증치세 정책	《증치세법》 및 《실시조례》
‘경내에서의 서비스 및 무형자산 판매’란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경내에 있음을 말하나, 경외 판매자가 경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되 전부 경외에서 발생한 서비스 또는 전부 경외에서 사용하는 무형자산은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치세법》에 따르면, ‘경내에서의 서비스 및 무형자산 판매’란 판매한 서비스, 무형자산이 경내에서 소비되거나, 판매자가 경내 단위 또는 개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실시조례》 제 4 조는 “경내에서 소비”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一) 경외 판매자가 경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무형자산. 단, 경외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는 제외. (二)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판매한 서비스·무형자산이 경내의 재화·부동산·자연자원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三) 국무원 재정부문 및 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

《증치세법》과 《실시조례》에서 “경내에서의 서비스 및 무형자산 판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경내에서 소비**”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PwC의 관찰	“경내에서의 서비스 및 무형자산 판매”의 판단 기준 변화는 대부분의 경내 판매자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경외 판매자의 과세거래 판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조례》 제 4 조 제(一)항 규정(이하 ” 경외→경내 거래 “)은 현행 증치세 정책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경외 판매자가 경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무형자산은 모두 과세거래에 해당되며, 경외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경외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외 관광, 의료 등 생활 서비스, 경외에서 집행되는 광고 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시조례》 제 4 조 제(二)항 규정은 현행 정책과 다릅니다. 즉, 경외 판매자가 경외 구매자(이하 ” 경외→경외 거래 “)에게 경내 재화, 부동산, 자연자원과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중국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직접 관련”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징수관리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외 단위가 경외 개인에게 중국 부동산 임대 관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내 부동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	--

해당하는 것인지? 직접 관련된다면 경외 단위는 중국 증치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중국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에 대한 과세 권리와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지?

권고사항: 경외 판매자는 중국 세무당국의 “경외→경외 거래”에 대한 후속 설명 및 실무 기준에 주목해야 하며, 필요 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여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2. 경내 판매자의 “경내→경외 거래”: “전부 경외에서 소비(사용)”의 판단기준 명확화 필요

《증치세법》과 《실시조례》는 경내 판매자의 서비스·무형자산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원칙을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경내 단위 및 개인이 경외 단위에 제공하는 특정 “전부 경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전부 경외에서 사용”되는 기술(이하 “경내→경외 거래”) 및 국제운송 서비스 등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PwC의 관찰

《실시조례》는 경내 판매자가 판매하는 서비스·무형자산의 “전부 경외에서 소비(사용)”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외 판매자가 판매하는 서비스·무형자산 거래의 “경내 소비”(상기 1 번 항목 참조)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책상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⁴(재세[2016]36 호, 이하 “36 호문”) 별첨 4에 따르면, “전부 경외에서 소비”란 서비스를 실제 제공받는 자가 경외에 있고 경내 재화·부동산과 무관한 경우, 또는 무형자산이 전부 경외에서 사용되고 경내 재화·부동산과 무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 규정 하에서도 36 호문의 “경내 재화·부동산과 무관”이라는 표현을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내 소비”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한 36 호 문건은 일부 경내 판매자의 “경내→경외 거래”에 대해 증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시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건의: 중국 기업이 서비스·무형자산을 수출하는 경우, “전부 경외에서 소비(사용)”의 개념이 실무상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증치세 면제 규정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혼합판매”: 기업의 “주영업업무”가 아니라 거래의 “주된 업무”에 따라 적용세율 확정

현행 정책하에서는 하나의 판매행위가 서비스와 재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 혼합판매로 보며, 기업의 주영업업무가 제조·도소매인지 서비스업인지에 따라 적용 세율을 결정합니다.

《증치세법》은 혼합판매에 대해 “하나의 과세거래에 둘 이상의 세율 또는 징수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 거래의 주된 업무에 따라 세율 또는 징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시조례》 제 10 조는 “**주된 업무**”에 대해 추가적인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업무 간에 **명확한 주종 관계**가 있으며, 주된 업무는 거래의 본질과 목적을 반영하는 주체적 지위를 차지하고, 종된 업무는 주된 업무에 필요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며 주된 업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PwC 의 관찰

해당 거래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거래의 각 구성 요소가 구분이 불가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거래가 하나의 계약에 언급되어 있고 각 구성요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구분이 불가하며, 일부라도 결여될 경우 거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면, “하나의 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영”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상이한 과세거래별로 판매액을 구분 결산해야 하며, 구분 결산이 불가능한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하나의 거래”로 판정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심사뿐만 아니라 업무의 실질에 기초하여 판정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시조례》는 “주된 업무”에 따라 혼합판매의 적용세율을 확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업무의 “주종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거래의 각 부분별 판매액, 공정가액(개별판매액이 없는 경우) 또는 원가투입 등 계량공식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한편, “주종관계”의 판정은 세제혜택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화물운송대리 서비스는 현행 정책상 면세가 적용되나, 국제화물운송대리 서비스의 유형은 통관대리, 부두서비스, 하역서비스, 국내외 창고서비스, 국내외 운송서비스 등 매우 다양합니다. 만약 하나의 업무에 속한다면, 국제화물운송대리 납세인이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괄 면세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이슈가 대두됩니다.

건의: 혼합판매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은 거래 내용을 조속히 정리하고, 세무당국과 “주종관계” 판단 기준에 대해 사전 소통하며, 재무시스템을 새로 업데이트하여 관련 거래의 주된 업무에 태그를 부여함으로써 증치세 정책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간주 과세거래: 범위 축소

《증치세법》은 “간주 과세거래”의 범위를 축소하여, 다음 항목만을 유지하였습니다: (i) 단위(개인사업자 포함)의 무상 재화 이전, (ii) 단위가 자체생산/위탁가공한 재화를 집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iii) 단위 및 개인의 무형자산/부동산/금융상품의 무상 이전.

반면에, 현행 증치세 정책 하에서는 상기 항목 이외에도 (i) 무상 서비스 제공(무상 대출, 무상 임대 포함), (ii) 통일결산을 실시하는 총기구·분지기구 간의 현(시)을 넘나드는 재화 이동, (iii) 위탁 판매 등도 간주 매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PwC 의 관찰

신 규정 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상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간주매출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무상 이전(예: 주식의 무상 이전)은 여전히 간주 과세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건의: 무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증치세 처리는 신·구 정책 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과거 기간 중 무상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은 관련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무상 서비스 제공이 더이상 간주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결여된 경우에는 여전히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본 Newsflash 제 13 번 항목 참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무상 거래의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보관하여, 과세조정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새로 추가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

현행 증치세 정책하에서는 “비과세(不征税)” 판매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시조례》 제 22 조는 “납세인이 재화·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을 구입하여 다음 각 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비과세 거래(이하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증치세법》 제 3 조부터 제 5 조(PwC 주: 경내 발생 과세거래 및 간주 과세거래)까지에서 규정한 범위 외의 **경영활동**이 발생하고, 그와 관련된 금전 또는 비금전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 《증치세법》 제 6 조에 규정된 경우(PwC 주: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4 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wC 의 관찰

본 조항은 《실시조례》 제 25 조의 “5 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본 Newsflash 제 8 번 항목 참조)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 기존 《의견수렴본》에서는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었으나, 최종본에서는 공제불가 비과세거래의 범위가 “경영활동”으로 한정됨으로써 매입세액 전출 처리해야 할 비과세 거래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향후 배당금, 증치세 비과세 정부보조금, 투자·자금 유입, 비과세거래의 배상금, 보험금 수령액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과세 거래가 “경영활동”에 속하지 않아 매입세액 전출을 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인은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문제를 조기에 점검해 보고,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가 증치세 및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대출 서비스 구입: 여전히 매입세액공제 불가

《증치세법》 제 22 조는 불공제 매입세액 항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치세법》 발표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실시조례》 제 21 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납세인이 대출 서비스를 구입하여 발생한 이자지출 및 대출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투자·금융 자문비, 수수료, 자문비 등의 비용지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당분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국무원 재정부문 및 세무주관부문은 대출 서비스 이자 및 관련 비용지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공제 불허 정책의 집행 효과를 적시에 연구·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현행 증치세 정책과 일치합니다.

PwC 의 관찰

건의: 기업은 여전히 대출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식별하여 불공제 또는 전출 처리를 해야 합니다.

7. 음식·오락·주민생활 서비스의 재판매: “직접 소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현행 증치세 정책 하에서는 음식, 오락, 주민생활 서비스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일률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증치세법》 제 22 조는 납세인이 “구매하여 **직접 소비에 사용하는** 음식 서비스, 주민생활 서비스 및 오락 서비스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PwC 의 관찰

이 조항의 문구 변경은 직접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 생산·경영 또는 재판매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식·오락·주민일상생활 서비스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시·컨벤션 기업, 음식 플랫폼 기업 등 음식 서비스를 외부 구입하여 생산경영에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크나큰 혜택이 됩니다. 다만, 《실시조례》는 “직접 소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 전시·컨벤션 기업, 음식 플랫폼 기업 등은 업무 방식과 계약 문서를 조속히 정리하고, 주관 세무기관과 “직접 소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정의에 대해 사전 협의하며, 해당 구매가 “직접 소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증빙을 확보하고, 증치세 전용계산서 발급 사항에 대해 공급상과 사전 소통함으로써 매입세액이 순조롭게 공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신규 개념: 고액 겸용 “장기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제한

《실시조례》 제 25 조는 “장기자산(고정자산,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 포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고, 일반과세방법 적용 항목과 불공제항목(간이과세방법 적용 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 집단복지 또는 개인소비)에 겸용되는 경우(이하 “혼합용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 원가가 500 만 위안 이하인 단일 장기자산은 그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가능**
- 원가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단일 장기자산은 구입 시 매입세액을 **우선 전액 공제하였다가, 혼합 용도로 사용되는 기간동안 조정연한에 따라 불공제액을 계산하고 매년 조정함.**

현행 정책 하에서 겸용 장기자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PwC 의 관찰

《실시조례》는 현행 증치세 정책하에서 장기자산의 매입세액 처리 방식에 대해 비교적 큰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장기자산의 원가를 기준선으로 삼아, 겸용 장기자산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원가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단일 장기자산을 겸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더 이상 전액 공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건의 : 장기자산 매입세액 공제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향후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에서 별도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후속 문건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부 쟁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일(单项)” 장기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예를 들어, 기업이 하나의 생산라인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대의 설비를 구매·설치하는 경우, 각 설비들은 하나의 완성된 생산라인을 구성해야 특정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나, 각각의 설비는 성능이 양호한 상태에서 분리하여 다른 생산 공정에 재조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개별 설비를 “단일” 장기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생산라인을 “단일” 장기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 ‘조정연한(调整年限)’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계상 감가상각·상각연수를 참고하는지, 아니면 기업소득세법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만약 전자(회계기준)가 맞다면, 사용연수가 불확정되어 회계상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연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반대로 후자(기업소득세 기준)가 맞다면, 기업소득세 목적 상 가속상각하거나 일시상각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연수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 500 만 위안 기준은 회계상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상 금액으로 확정하는지?
- 장기자산의 처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기존 장기자산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마련될 것인지?

“장기자산” 개념의 도입은 기업의 재·세업무에 상당한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업은 자산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장기자산의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통일된 데이터 산출로직을 설계하며, 증치세 관리대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 시 세무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여, 규정 준수는 물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증치세 관리를 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 새로운 메커니즘: 구분불가한 매입세액의 전출은 연도별 “종합정산” 필요

“일반과세자가 재화(고정자산 제외)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여 간이과세방법 적용 항목, 증치세 면제항목 및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에 사용하여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실시조례》는 판매액 또는 **수입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행 증치세 정책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공제불가 매입세액 = 당기 구분불가 전체 매입세액 \times (당기 간이과세방법 적용 항목 판매액 + 당기 증치세 면제항목 판매액) \div 당기 전체 판매액

또한, 현행 증치세 정책하에서는 “주관 세무기관은 상기 공식에 따라 연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제불가 매입세액에 대해 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시조례》 제 23 조는 납세인에게 “판매액 또는 수입 비율에 따라 기간별로 당기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다음연도 1월 증치세 신고기한 중에 연도 종합정산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wC의 관찰

신 규정은 구분불가 매입세액의 전출에 대해 “수입 비율”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신 규정에서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는 증치세 판매액이 없으므로 새로운 표현이 좀더 엄격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입 비율 방식”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수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후속 문건에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도 종합정산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가 주관 세무기관의 재량에 달려있었으나, 신 규정 하에서는 종합정산이 납세인의 필수 준수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캠플라이언스 메커니즘은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기업의 증치세 신고 실무에는 훨씬 많은 복잡성을 초래하였습니다.

건의: 기업은 향후 “수입 비율”에 대한 해석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6년 1월의 최초 납세신고기간에 《증치세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정산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명확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 신규 원천징수의무: C2B 거래에서 기업은 증치세 원천징수납부 필요

현행 정책하에서는 자연인이 과세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자연인이 자진납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인이 자진납세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일부 세원이 유실되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자연인인 대금수취인으로부터 증치세 계산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소득세 비용공제 측면에서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조례》 제 35 조에서는 “자연인이 규정에 부합하는 과세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금을 지급하는 경내 단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납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문이 제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PwC 의 관찰

C2B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은 새로운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C2B 거래량이 상당히 큰 산업(예: 플랫폼 기업)에게는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개인으로부터 대량의 구매를 하되 세금계산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증치세 원천징수납부가 오히려 기업소득세 비용공제에 보다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소득세 비용공제, 나아가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후속 문건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 기업은 조속히 관련된 거래를 정리하고, 원천징수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관련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적법하고 정확하게 원천징수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1. 새로운 신고기한: 건별 납세의 경우 다음연도 6 월 30 일까지 신고 필요

현행 증치세 정책하에서는 건별 납세의 경우 신고기한은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5 일 이내입니다.

《실시조례》 제 44 조는 건별로 납세하는 납세인의 경우, 판매액이 과세기준점에 도달하면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다음 해 6 월 30 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wC 의 관찰

이번 신 규정은 건별로 납세하는 납세인(예: 자연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서, 해당 납세인은 적어도 6 개월의 합법적인 신고기간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개인소득세 중 경영소득과 종합소득의 정산처리 기한은 각각 다음 해 3 월 31 일과 6 월 30 일까지인데, 증치세를 건별로 납부하는 자연인의 납세기한도 다음 해 6 월 30 일까지입니다. 이는 아마도 개인소득세와 증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 건별로 납세하는 납세인은 관련 납세의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세무기관은 이러한 유형의 납세인에 대하여 징수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신규 제한 사항: 기한 경과 미신고 시 수출 환급(면세)을 내수 판매로 간주

현행 증치세 정책 하에서는 납세인이 재화·용역을 수출하거나 국경간 과세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환급(면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외화대금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관련된 증빙을 구비하거나 외화수취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수출환급(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시조례》 제 48 조는 “납세인이 환급(면세) 또는 증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수출업무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내 판매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의견수렴본》에서는 수출환급(면세)/증치세면제 신고에 대하여 수출통관일로부터 36 개월이라는 **최종신고기한**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실시조례》 최종본은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한은 후속 문건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징수관리 측면에서는 해당 재화/서비스/무형자산에 대해 수출환급(면세)/증치세면제 정책을 계속 적용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내수판매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실시조례》 제 52 조에서는 세무기관에게 관련 단위·개인으로부터 수출 세수징수관리와 관련된 물류, 통관, 화물운송대리, 자금결제 등의 정보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 신 규정 시행 이후 세무기관은 보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통해 “데이터 기반 과세”라는 빅데이터 징수관리 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PwC 의 관찰

건의: 기한 초과 시 내수판매로 간주하는 신 규정은 수출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세금비용과 자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후속 문건에 대해 면밀히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기한 초과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해외 창고로까지 수출하였다가 재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기한 내 모든 판매를 완료하고 수출환급(면세) 신청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 시 수출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 신규 억제장치: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통한 조세회피행위 포괄 규제

《실시조례》 제 53 조에서는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납세인이 합리적인 상업 목적이 없는 거래를 실시하여 증치세 세액을 감소·면제·지연 납부하거나 조기 환급 또는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PwC 의 관찰

《증치세법》 제 20 조와 《실시조례》 제 18 조에는 이미 납세인의 판매액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추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현실에서의 복잡한 조세회피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은 포괄적·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어 기타 합리적인 상업적 이유가 결여된

거래를 포괄하였습니다. 현재 《세수징수관리법》도 수정 단계에 있는데, 2025년 발표된 《세수징수관리법(수정 의견수렴본)》에 따르면, “납세인이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결여된 거래를 실시한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증치세 신 규정과 《세수징수관리법》이 결합될 경우, “합리적 조정 진행”은 “판매액 추계”에 비해 훨씬 폭넓고 강력한 조정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 현재 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은 이미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거래를 실행할 때에는 거래의 전체적인 상업 목적과 결합하여 납세조정 리스크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증치세와 관련된 거래 역시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세무기관에 의한 과세조정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증치세법》 및 《실시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업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빠듯합니다. 기업은 소속 산업과 자신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영향을 신속히 평가하고, 사업모델, 구매/판매정책, 시스템, 계산서 발급, 신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규 체계 하에서 현행 정책의 효력과 미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수의 후속·보완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후속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화·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 세목 주석
- 국경간 거래에 대한 면세·영세율 처리 및 적용 요건(특히, “전적으로 경외에서 소비(사용)”, “경내 화물, 부동산, 자연자원과 직접 관련” 등 핵심 개념에 대한 해석)
- 수출환급(면세)의 구체적인 처리방법
- 구분불가 매입세액 전출의 공식 및 연간 정산조정의 구체적인 방법
- “장기자산” 매입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방법
- C2B 거래의 증치세 원천징수납부 절차
- 증치세 즉징즉퇴, 면세, 차액징수, 간이과세 5% 징수율 등 정책의 유지·통합·중단 여부

PwC는 향후 증치세의 진행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증치세 신 규정에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석

1.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실시조례》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12/content_7053149.htm

2.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237365/content.html>

《증치세법》 세부 해설에 대해서는 PwC 의 《China Tax & Business news flash》 2024 년 제 19 호 참조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4q4/chinatax-news-dec2024-19.pdf>

3.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실시조례(의견수렴본)》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356/n810961/c5242227/content.html>

《의견수렴본》 세부 해설에 대해서는 PwC 의 《China Tax & Business news flash》 2025 년 제 10 호 참조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5q3/chinatax-news-aug2025-10.pdf>

4.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에 관한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36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3752/content.html>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5 年 12 月 31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5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